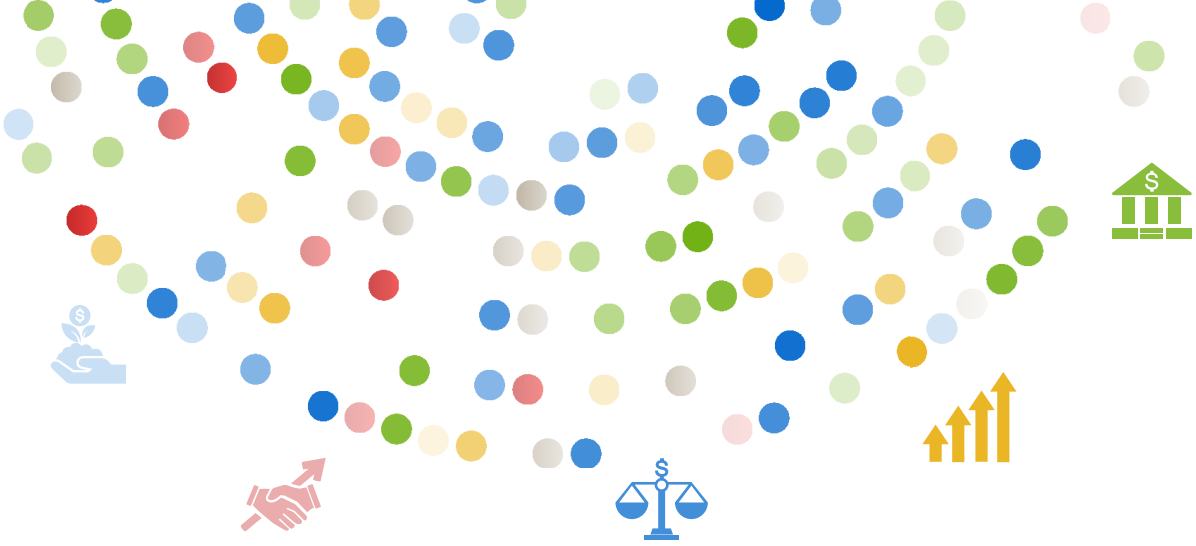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3

03. 국내 입법동향 6

04. 해외 입법동향 8

1. 북미 8
2. 유럽 9
3. 아시아/오세아니아 14
4. 요약 16

05. 요약 및 시사점 17

참고문헌 18

01 도입 배경

해외 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위험도 증가함[1)]

- 조세회피의 시도는 거주자가 해외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자회사에 유보하여 과세를 장기간 이연하거나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재투자 또는 조세부담이 낮은 소득으로 전환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G20 회원국 중29개국이 'CFC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CFC 제도'란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는 제도임

BEPS Action 3은 다국적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세무상의 이유로 비거주자인 관계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비거주자인 관계사로 이전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CFC 규정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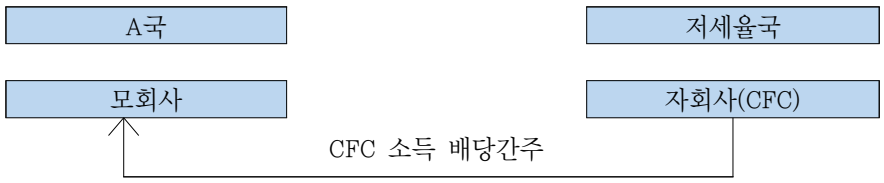
- CFC 규정 및 과세이연 방지 규정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 자회사가 과세소득을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CFC 규정이 없고 CFC 규정이 있더라도 BEPS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음

BEPS Action 3은 CFC 규정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CFC 규정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CFC 규정의 구성요소는 ① CFC의 정의, ② CFC의 면제 및 적용 요건, ③ CFC 소득의 정의, ④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⑤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⑥ 이중과세 방지 규정임
- 제시된 구성요소들은 아직 CFC 규정이 없는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시행할 것과 이미 CFC 규정이 있는 국가들은 권고사항과 일치시키는 조정을 할 것을 권장함

1)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II)」, 2015.11.23., p.8

표 1 OECD가 제시한 CFC제도의 모범관행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II)」, 2015.11.23., p.8

02 주요 권고사항[2)]

■ **효과적인 CFC 제도 설계를 위하여 ① CFC의 정의, ② CFC의 면제 및 적용 요건, ③ CFC 소득의 정의, ④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⑤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⑥ 이중과세 방지 규정의 6가지로 구분하여 권고안을 제시함**

■ **CFC 정의규정에서, CFC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① 외국기업이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인지, ②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에는 법인뿐 아니라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 포함함
- 지배력의 판단은 최소한 법적·경제적 지배력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함
  - 거주자(법인, 개인)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3)]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경제적·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자회사도 포함됨

■ **CFC 면제 및 적용 요건에 의해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BEPS 위험이 거의 없는 실체들은 CFC 적용을 배제하고 BEPS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세율면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세율면제란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과 유사한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CFC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모회사 관할국과 유효세율이 낮거나 비슷한 국가 또는 유사한 조세체계를 가진 white list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

---

2)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3) 특정 상황의 경우 50% 이하 지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50% 이하 요건을 선택할 수도 있음

■ **BEPS 문제를 야기하는 소득이 모회사 관할국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CFC 소득의 정의 규정을 포함하되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각국이 직면한 BEPS 위험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권고함**

- 범주적 접근법: 이동성이 높고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동소득을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실질기반 접근법: CFC의 실질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CFC의 소득 중 일정 비율만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초과이익 접근법: 통상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CFC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CFC 소득 계산 시 어느 관할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와 CFC 소득 계산 시 손실상계 허용범위임**

- CFC소득은 모회사 관할국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을 권고함
- CFC손실은 동일 CFC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이익과만 상계가능하도록 하는 손실상계 제한을 권고하고 모회사 이익과의 상계는 금지함

■ **CFC 소득 계산 후 CFC 주주에게 적절하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규정이 필요함**

- CFC 소득을 귀속받는 사람은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임
- CFC 소득 귀속금액은 지분율 또는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산정됨
- 관할국은 CFC 규정이 국내법과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납세자의 소득이 포함되는 시기와 운영방법을 결정함
- CFC 소득의 유형은 각 과세관할국 상황에 맞게 결정함
- CFC 소득의 적용세율은 모회사 관할국 세율을 적용함

■ **CFC 규정의 설계에서 이중과세 방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중과세를 초래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CFC 소득이 CFC 소재국에서 과세된 후, 모회사 CFC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배당소득 면제제도 적용을 권고함

표 2 Action 3 주요 권고사항 요약

구분	OECD권고사항
CFC의 정의	법인 이외에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 포함
CFC 면제 및 적용 요건	모회사 관할국 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유효세율인 경우 CFC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세율면제 규정
CFC 소득의 정의	각 관할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
CFC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 CFC 소득은 모회사 관할국 규정에 따라 계산 - CFC 손실은 동일 CFC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 이익과만 상계 가능(모회사의 이익과는 상계 금지)
CFC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 CFC 소득 귀속자: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 - CFC 소득 귀속금액: 지분율 또는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산정 - CFC 소득 신고시기: 관할국의 국내법과 일관성 있게 결정 - CFC 소득의 분류: 각 관할국 상황에 맞게 결정 - 적용세율: 모회사 관할국 세율
이중과세방지 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배당소득 면제

03 국내 입법동향

우리나라는 1995년에 CFC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OECD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

- CFC 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이후 2010.1.1. 세법개정에서 CFC 제도의 적용지역에서 조세피난처를 제외하면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로 변경하였음[4)]

우리나라의 CFC 제도는 OECD의 권고사항에 대부분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CFC의 범위, CFC 소득분류 및 계산 등 일부 권고안과 다른 부분이 있음

- CFC의 범위: 법인으로 한정함
- CFC의 적용면제 요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세율면제 규정과 CFC의 실제 발생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배제하는 최저금액기준을 두고 있음[5)]
- CFC 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함[6)]
- CFC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CFC 소득은 CFC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CFC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
- CFC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자에게 CFC 소득이 귀속되고 보유기간에 관한 요건은 없으며, 적용세율은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임
  - 도입 당시 지분율 요건은 20% 이었으나 2011.12.3. 개정으로 10%로 변경됨[7)]
- 이중과세 방지 규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함[8)]

---

4) 홍범교·김태훈·마정화(2010), p.1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국제거래에 있어서 납세자가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FC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규정이 2014.1.1.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9)]

- 제출자료는 CFC의 재무제표, CFC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CFC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CFC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CFC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임
- 제출기한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임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04 해외 입법동향

1 북미

■ 미국은 1962년 CFC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OECD 권고사항 중 CFC적용면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0)]

- CFC 범위에 해외법인 외에 파트너십도 포함하며, 미국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CFC의 의결권 수 또는 주식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CFC로 봄
- 미국 주주가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CFC 소득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과세함
  - 과세대상 CFC 소득은 보험소득, 배당, 이자, 렌트, 로열티, 자본이득 등임

■ 캐나다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나 OECD 권고사항 중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CFC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과 CFC 적용면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1)]

- 캐나다 기업이 해외기업(foreign affiliate)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거나, 캐나다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기업 지분의 합이 10%이상인 경우 CFC로 봄
- CFC의 수동소득을 캐나다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소득에 귀속시켜 과세하며,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특별히 규정한 바 없음
  - 수동소득은 배당, 이자, 렌트, 로열티, 자본이득과 같은 투자소득을 말함

10) Country Analyses IBFD,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1) Country Analyses IBFD , "Canada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 유럽

독일은 CFC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 중 CFC 범위에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2)]

- 유효 법인세율이 25% 미만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을 CFC로 봄
  - 단, EU경제구역에 속하는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수동소득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따로 없으며,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주주 지분율만큼 과세함

영국은 2013년부터 'Finance Act 2012'를 통해 CFC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OECD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함[13)]

- 기업의 실질지배 여부에 따라 CFC 규정을 적용하고, CFC의 실질적 영업활동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함
- 지배기준은 법적 지배, 경제적 지배, '40%룰'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지분율을 제시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CFC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고 있음
  - 법적 지배는, 구체적인 지분율은 제시하지 않고,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경제적 지배는, 1)회사의 모든 지분 판매 시, 2)회사의 모든 수익을 분배 시, 3)회사 청산으로 모든 재산 처분 시, 처분금액의 50%이상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40%룰'은, 2명의 주주(1명은 영국 거주인, 나머지 한명은 외국인)가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영국인이 보유한 지분이 40% 이상,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이 40% 이상 55% 이하이면 CFC로 보는 규정임
- 과세소득은 CFC 소득이 인위적으로 영국에서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CFC charge gateway' 규정을 통해 CFC의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과세함
- 세율면제규정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적용됨[14)]

---

12) Country Analyses IBFD,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3)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100), 접속일자 2016.08.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4)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300), 접속일자 2016.08.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회계이익 또는 과세이익이 50만파운드 미만이면서 영업외수익이 5만파운드 미만인 경우
- CFC의 회계상 이익이 영업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CFC가 영국 법인세율의 75% 이상으로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CFC의 유효세율이 영국 유효세율의 75% 이상인 경우

프랑스는 CFC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15)]

- 프랑스 거주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프랑스 유효법인세율보다 50% 이상이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CFC로 봄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따로 없으며, CFC가 고정사업장인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인 경우 수동소득에 대해 프랑스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함

덴마크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나, OECD 권고사항 중 CFC 적용면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6)]

- CFC 범위에 법인 외 고정사업장도 포함하며, 덴마크 주주가 보유한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CFC로 봄
- 덴마크 주주가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FC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지분율만큼 과세함
- 단, CFC의 전체소득 중 수동소득이 50% 미만 경우에 CFC 규정을 적용 안함

핀란드는 CFC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2015년부터 고정사업장도 CFC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OECD의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함[17)]

- 핀란드 거주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해외기업을 CFC로 봄
  - 저세율국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핀란드 법인세율의 3/5보다 낮은 국가를 말함
  - 단, 핀란드와 조세조약을 맺거나 EU국에 소재하고, 기업실질이 있는 경우 저세율국이라 하더라도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핀란드 주주가 CFC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주주지분율만큼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

15) Country Analyses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6) Country Analyses IBFD,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7)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pp.19-20, 201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그리스는 2014년 1월부터 CFC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CFC 범위에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8)]

- 그리스 거주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CFC로 보아 CFC의 미분배 소득에 대해 주주지분율만큼 과세함
- 외국법인이 그리스 재무부가 매년 고지하는 'black list'에 속하거나, 비EU국 중 법정 법인세율이 13%(그리스 법인세율의 50% 수준)미만인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CFC 규정을 적용하는 세율면제규정을 운영 중임

헝가리는 CFC 제도가 이미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 중 CFC 범위에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중과세조정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19)]

- 헝가리 거주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인 소득 대부분이 헝가리 원천소득인 경우 CFC로 봄
  - 저세율국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0% 미만인 국가를 말함
  - 단, EU회원국 또는 헝가리와 조세조약을 맺은 OECD국은 저세율국이라 하더라도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따로 없으며, 주주에게 아직 분배되지 않은 CFC의 세후수익에 대해 주주지분율만큼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이탈리아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OECD의 권고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20)]

- CFC 범위에 기업, 파트너십, 고정사업장을 모두 포함하며, 비EU국 중 이탈리아 명목 법인세율의 50%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CFC로 봄
  - 기존에는 매년 black list 국가를 규정하여 CFC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 명목 법인세율만 고려하여 CFC 규정을 적용함
  - 단, 2009년 CFC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EU국 거주 해외법인이라도 전체소득의 50% 이상이 수동소득인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따로 없으며,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이탈리아 주주의 지분율만큼 과세함

---

18) Country Analyses IBFD, "Greece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9) Country Analyses IBFD, "Hungar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p.28, 201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0) Country Analyses IBFD, "Ital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노르웨이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CFC 범위에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21)]

- 노르웨이 거주자가 50% 이상 보유한 기업이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경우 CFC로 봄
  - 저세율국은 노르웨이 명목 법인세율의 2/3 미만인 국가를 말함
  - 단, 유럽경제연합에 소재하고,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와 white list에 지정된 국가는 CFC 규정을 적용안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없으며,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CFC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주주의 보유지분에 따라 주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폴란드는 2015년 1월부터 CF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OECD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함[22)]

-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CFC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만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CFC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해외법인이 폴란드 정부가 공시한 저세율국에 위치
  - 폴란드 또는 EU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위치
  - 폴란드 납세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체소득 중 50% 이상이 수동소득이면서 수동소득이 폴란드 법인세율의 25%보다 낮게(14.25%) 과세되는 법인
- CFC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경우(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
  - 해외법인의 연간 소득(income)이 25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외법인이 EU국 또는 EU경제연합국에서 설립되고,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는 경우
  - EU국, EU경제연합국 외의 국가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실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전체소득 중 수동소득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르투갈은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CFC 범위에 파트너십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23)]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 포르투갈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25% 이상,

---

21) Country Analyses IBFD, "Norwa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2) Country Analyses IBFD, "Po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3) Country Analyses IBFD,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그 외의 경우 50% 이상 보유한 경우 CFC로 봄

- 조세피난처는 조세우대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포르투갈 재무부에서 지정한 black list에 속하거나 포르투갈 유효법인세율의 60% 미만인 국가를 말함
- 단, 해외법인이 EEA에 속하면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없으며, 그 외 해외법인의 경우 주주가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FC 소득에 과세함

스페인은 기존에 CFC 제도가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24)]

- CFC범위에 해외법인 외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 포함하며, 저세율국에 위치한 해외법인 등의 지분을 스페인 거주인이 50% 이상 보유한 경우 CFC로 봄
  - 저세율국 기준은 스페인 유효법인세율의 75% 미만(18.75%)인 국가를 말함
  - EU국에 속하고,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CFC는 CFC 규정의 적용을 면제함
- CFC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경우 수동소득에만 과세하고, 없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없음

스웨덴은 기존에 CFC 제도가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25)]

- CFC 범위에 해외법인, 고정사업장을 포함하며, 저세율국에 위치한 해외법인 등의 지분을 스웨덴 거주인이 25%이상 보유한 경우 CFC로 봄
  - 저세율국은 스웨덴 명목법인세율의 55% 이하(12.1%)로 과세되는 국가를 말함
  - 단, EEA에 속하고 실질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또한 각 대륙별로 white list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CFC가 소재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CFC의 모든 소득에 대해 주주의 지분율만큼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 과세대상 주주의 지분율 기준은 없음

24) Country Analyses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5) Country Analyses IBFD, "Sweden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러시아는 2015년 1월부터 CFC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OECD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26]

- 개인주주가 해외법인 또는 법인실체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개인 및 법인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CFC로 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 안함
  - CFC가 유라시안경제연합에 소재하는 경우
  - CFC가 러시아와 이중조세조약을 맺고 러시아 평균 법인세율의 75% 수준 이상으로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 CFC 수동소득이 전체소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CFC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FC의 미분배소득에 대해 주주의 지분율만큼 과세함
  - 2016년 이전에는 각 주주의 지분율 상관없이 CFC 소득에 과세함

3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은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OECD의 권고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27]

- CFC 범위에 법인 외에 신탁도 포함함[28]
- 일본주주가 저세율국에 위치한 해외기업 또는 신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한 경우 CFC로 봄
  - 저세율국은 유효 법인세율이 20% 이하인 국가를 말함
  - 단, CFC 소재지국에서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거나, 주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점, 사무소 등을 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주주가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지분율만큼 CFC과세소득을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 CFC 과세소득은 일본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CFC 이익 조정금액에서 7년간 발생한 결손금, 법인세 납부액,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26)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pp.58-59, 201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7) Country Analyses IBFD, "Japan – Corporate Taxation," sec. 10, 2016.01.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2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8항,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 p.33, 홍범교·김태훈·마정화, 201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인용

중국은 기존에 CFC 제도가 존재하며, OECD 권고사항 중 고정사업장 또는 파트너십 등도 CFC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29)]

- 중국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기업이 저세율국에 위치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CFC로 봄
  - 저세율국은 중국 법인세율의 50%보다 낮은 국가(법인세율이 12.5% 이하)를 말함
- 주주가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FC의 모든 소득에 주주의 지분율만큼 과세함
  -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CFC 소득을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호주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OECD의 권고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30)]

- CFC범위에는 법인, 파트너십, 신탁, 호주 거주법인을 모두 포함함
- CFC 과세소득은 수동소득, FIF소득, 부정판매소득 등임
- CFC 소득귀속자는 CFC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를 하는 주주임
- CFC 적용면제 요건으로 CFC가 호주 재무부에서 정한 국가(listed country)에 소재하고, 과세대상 소득이 총매출액의 5% 이하(연간매출액이 1백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5천호주달러를 초과(연간매출액이 1백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하지 않는 경우 CFC 소득에 과세하지 않음
  - listed country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임

뉴질랜드는 CFC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며, OECD의 권고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음[31)]

- CFC 범위에 법적실체가 있는 개체(법인, 신탁 포함)를 모두 포함하며[32)], 뉴질랜드 거주자가 40% 또는 50%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을 CFC로 봄
  - 1명의 뉴질랜드 거주자가 해외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지분율 40% 이상이며, 5명 이하의 거주자가 해외기업 지배 시 지분율 기준은 50% 이상임
- 뉴질랜드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CFC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FC의 수동소득

---

29)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p.12, 201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30) Country Analyses IBFD ,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1.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31) Country Analyses IBFD, "New Zea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32)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toii/cfc/what-cfc.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에 대해 보유지분율에 따라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함

- CFC의 수동소득이 전체소득의 5% 미만이거나, CFC가 호주 거주자로 발생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과세되고, 해외소득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33)]

4 요약

■ **2016년 6월 현재 총 42개 조사국 중 13개 국가를 제외한 29개국에서 CFC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음**

- CFC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중 대부분이 BEPS 보고서 이전에 CFC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리스(2014년),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2015년), 칠레(2016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하였음

표 3 CFC제도 도입 현황

구분	국가
CFC 규정 도입국	미국, 캐나다, 칠레(2016.1. 도입), 멕시코, 브라질(2015 도입), 아르헨티나,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2014.1. 도입),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2015.1. 도입),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러시아(2015.1. 도입),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한국
CFC 규정 미도입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5를 기준으로 작성

33) ibid., sec. 10.4.1.4, 10.4.1.5.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5 요약 및 시사점

Action 3은 효과적인 CFC 제도의 설계를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 CFC는 법인 외에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을 포함할 것
- CFC 면제 및 적용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CFC 소득은 각 국가의 내국세법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함
- CFC 소득 계산에 있어서 모회사 관할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과 CFC 손실은 동일한 CFC 소득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 이익과 상계 가능하도록 함
- CFC 소득은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귀속금액은 지분율 또는 지분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CFC 소득의 적용세율은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을 적용함
-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함

CFC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 중 13개국을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CFC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29개 국가 중 그리스는 2014년,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이 2015년, 칠레가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의 국가는 BEPS 보고서 이전부터 CFC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

우리나라는 BEPS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체로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CFC의 정의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CFC 소득의 산정 시 손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Action 3에서는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을 포함하여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 광범위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는 법인 외 다양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 만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CFC를 폭넓게 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CFC 소득의 산정 시 손실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참 • 고 • 문 • 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2호, 2015.12.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12.

EY,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5.

IBF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n CFC rules - details," 2016.01.19.

_____,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1, 접속일자 2016.08.01.

_____, "Canada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1.

_____, "Denmark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5, 접속일자 2016.08.01.

_____,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1.

_____,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1.

_____, "Greece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5, 접속일자 2016.08.01.

_____, "Hungar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1.,

_____, "Ital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2.

_____, "Japan – Corporate Taxation," sec. 10, 2016.01, 접속일자 2016.08.02.

_____, "New Zea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3.

_____, "Norway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3.

_____, "Po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3.

_____,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2, 접속일자 2016.08.03.

_____, "Spain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3.

_____, "Sweden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3.

_____,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10.4, 2016.04, 접속일자 2016.08.03.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